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8조의3의 요약

○ 실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에 근거해 법인세 신고납부한 후 나중에 경정청구사유로 재계산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과다납부법인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간 납부할 정규 법인세액 및 향후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과다납부세액을 순차적 차감함.

○ 동일 사업연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의 경정청구 이외에도 다른 경정청구사유가 있으면 다음 산식으로 세액공제함.

$$\text{과다납부한 총세액} \times \frac{\text{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금액}}{\text{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총합계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해 경정전에 미리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여기서 먼저 공제함.

●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I.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제재 강화

법인이 실제 손익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수익 또는 자산의 과다계상, 소속공인회계사 등의 경고·주의조치)를 받은 법인이 분식회계관련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을 경정받는 때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 범위내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즉, 경정신고, 감액경정청구 접수하면서 감액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도 법인세 신고분의 세액이 있으면 이 금액과 향후 5년간의 일반법인세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잔액이 있으면 납부한다.

그러나 분식회계관련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한 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되었다고 계상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II. 동일사업연도에 일반 경정청구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일반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가 동일한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 과다납부한 세액을 계산하여 일반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세표준을 금액대로 구분하여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 부분금액만 즉시 환급을 제한한다. 일반경정청구관련 과다납부는 경정신고하면서 당연 환급된다는 뜻이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과다납부한 세액} \times \frac{\text{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text{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총합금액}}$$

관련법령

●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text{과다납부한 세액} \times \frac{\text{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text{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① 사 례

- 10년 신고과세표준 : 5억원
 - － 납부세액 : 8,600만원(2억원×10%+3억원×22%)
- 경정청구로 인한 10년 재계산된 최종 과세표준 : 2억원(5억원에서 3억원이 감소됨) = 환급세액 : 6,600만원(8,600만원 - 2,000만원)
 - － 분식회계로 기인한 과표 수정액 : △1억원
 - － 일반경정에 기인한 과표 수정액 : △2억원
- 분식회계로 향후 5년간에 걸쳐 환급되므로 즉시 환급이 제한받는 금액 : 3,300만원

$$\text{총한도액 } 6,600\text{만원} \times \frac{1\text{억원}}{2\text{억원}}$$

* 일반경정으로 인한 3,300만원(6,600만원 - 3,300만원)은 즉시 환급됨.